



**Q1** 생활지원(유급휴가비용·생활지원) 제외대상이 있나요?

**A1**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,  
- 해당 기관의 직원(공무직 포함)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  
\*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제외

**Q2**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?

**A2** 본인 또는 가족(국가·공공기관 정규직 제외)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  
-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Q3** '20. 4. 1.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생활지원(유급 휴가비용·생활지원비)이 가능한가요?

**A3**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4.1.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(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),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축소에 따라 4.1. 이후 입국자는 생활 지원(유급휴가비용·생활지원비)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##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 
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 
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.



### ☎ 더 궁금하신 사항은?

#### | 유급휴가비용 |
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
- 서비스 안내·신청·상담: 국민연금공단 지사

#### | 생활 지원비 |
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서비스 안내·신청·상담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# 생활지원비



# 유급휴가비용



# 이 점이 궁금해요?!



##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·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

##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?

- “국가”·“공공기관” 및 “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”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(가구원 포함)인 경우
  - 다만,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
- (중복지원 제외) 가구원 중 1명이라도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
- 4월 1일 0시 이후(입국검역 강화 조치) 모든 국가 입국자

## 얼마나 지원되나요?

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(1개월분) 지급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금액(원)	454,900	774,700	1,002,400	1,230,000	1,457,500

\*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

##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
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## 언제 신청하나요?

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~별도 공지시까지

##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?

-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- ③ 신청인 명의 통장(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,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##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·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\*를 제공한 사업주

\*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(연월차) 제외

##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?

- “국가”·“공공기관” 및 “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” 등의 사업주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
- (중복지원 제외) 근로자의 가구가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
- 4월 1일 0시 이후(입국검역 강화 조치) 모든 국가 입국자

## 얼마나 지원되나요?

-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(일 최대 13만원)

##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
국민연금공단 각지사

## 언제 신청하나요?

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~별도 공지시까지

##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?

-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-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

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.



**Q4**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**A4**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「감염병예방법」과 관련 절차(입원치료·격리통지서 발부)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 
-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.

**Q5**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?

**A5** 생활지원은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.  
※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**Q6**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?

**A6**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 
- 다만,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
**Q7**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?

**A7** 생활지원비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  
-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「감염병예방법」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, 지원할 수 있습니다.